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639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7.

발의자 : 이종배 · 김상훈 · 곽대훈
유재중 · 이채익 · 金成泰
이은권 · 김명연 · 주호영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,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,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함.

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·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,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이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

려는 것임(안 제84조제3항 및 제118조제1항제2호).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18조제1항제2호 중 “상표권자”를 “상표권자(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4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생 략) <p><u>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</u> <u>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</u> <u>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</u> <u>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84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현행과 같음)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18조(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)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해당 <u>상표권자가 아닌 자가</u> <u>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</u> <u>경우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8조(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상표권자(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)</u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